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04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자문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.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의3).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소상공인담당관

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2.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
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<u>플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</u>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·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u>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2. <u>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3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<u>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<p>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.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<p>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</p> <p>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<p> <u>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</u> <u>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</u> <u>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</u> <u>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</u> <u>다.</u> </p>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”를 “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2.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-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현행	개정안
	<p>2. <u>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p> <p>⑤ <u>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</u></p> <p>⑥ <u>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⑦ <u>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